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8월 29일

권 유 자: 성 명: ㈜미래에셋글로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3, 타워1, 12층

전화번호: 02-6355-8908

작성자: 성명: 안중혁

부서 및 직위: 미래에셋자산운용㈜ REITs운용본부 선임매니저

전화번호: 02-6355-893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미래에셋글로벌위탁 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이사인 과계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8월 29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9월 13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9월 03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기취지			
가. 권유취지	2023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둘다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 http://evote.ksd.or.kr 모바일 :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미래에셋글로 벌위탁관리부동 산투자회사	0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국민은행 (미래에셋자산 운용)	최대주주	보통주	3,091,875	10.64	최대주주	_
겨		_	3,091,875	10.64	_	_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안중혁 (미래에셋자산운용㈜)	보통주	0	자산관리회사 직원	1	_
정재우 (미래에셋자산운용㈜)	보통주	0	자산관리회사 직원	_	_
장세희 (신한펀드파트너스㈜)	보통주	0	사무수탁회사 직원	_	_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안중혁 (미래에셋자산운용㈜)	개인	보통주	0	자산관리회사 직원	-	-
정재우 (미래에셋자산운용㈜)	개인	보통주	0	자산관리회사 직원	_	_
장세희 (신한펀드파트너스㈜)	개인	보통주	0	사무수탁회사 직원	_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8월 29일	2023년 09월 03일	2023년 09월 12일	2023년 09월 13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2023년 08월 16일) 현재 주주명부 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 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023년 제1차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09월 03일 9시 ~ 2023년 09월 12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http://evote.ksd.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모바일: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X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X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0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0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미래에셋 글로벌리츠	http://www.globalreit.miraeasset.com/	_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DART 공시

위임장 우편회신 접수처: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18층

신한펀드파트너스 대체투자사업부 장세희 대리(우: 07325)

- 개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주주본인의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법인: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 * 법인일 경우 모든 서류는 법인 인감으로 날인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9월 13일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20층
	HJ비즈니스센터 세미나실A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09월 03일 ~ 2023년 09월 12일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_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서면투표 가능
서면투표 기간	서면의결권 수취일부터 주주총회 전일까지(우편도착기준)
서면투표 방법	1) 주주총회 부의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
	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globalreit.miraea
	sset.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결권표시 방법 : 보내드린 의결권 행사양식의' 의사표시'란
	에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 반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3) 실질주주의 성명란은 기명날인(사인도 가능)을 하셔야 합니다.
	4) 주주님께서 의사표시하신 서면의결권행사 통지서(법인인 경우 법
	인인감증명서 포함)를 동봉한 반송용 봉투에 넣어 주주총회 개최일
	전 2023년 09월 12일(화요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부처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8 18층, 신한펀드파트
	너스㈜ 대체투자사업부 장세희 (우: 07325)
	5) 도착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모두 집계하여 주주총회 당일
	직접 참석한 주주님의 의결권 및 전자투표 의결권과 함산되어 주주
	총회 의안의 표결에 반영됩니다.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관련 주주총회 운영 안내

주주들께서는 가급적 총회장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리며, 의결권행사를 원하시는 주주들께서는 전자투표제도 및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를 통한 위임장이나, 서면 의결권행사통지서 활용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의결권행사를 부탁드립니다. 의결권대리행사권유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제1호 의안: 제5기 차입계획 승인의 건

나. 의안의 내용

□ 근 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2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호, 제4호의2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 2. 해당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차입 및 사채 발행)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을 투자·운용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제434조의 결의 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3조 (외부 차입)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정관이나 「상법」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정관 제26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①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는 다음 사항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결의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차입계획 및 사채발행계획. 다만, 두 기의 사업연도를 한 단위로 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할 경우, 각 단위 별로 먼저 도래하는 사업연도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다.

정관 제46조 (차입 및 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자산의 투자· 운용 하기 위하여 또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부투법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부투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차입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2. 「수산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③ 제1, 2항에 따른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은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상법」 제434조의 결의방법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

□ 주요 내용

- 1) 차입(예정)금액 : 총합 [400]억원 내외
- 2) 주요 차입(예정) 조건
- 만기: 18개월(1년 6개월)
- 차입 구분 : 담보대출
 - 금리 : 시중금리에 준함
- 차입 금융기관 : 제안된 금융기관 중 제안 기관의 신용도와 당 사의 사업계획 및 목적에 부합 여부를

포괄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 위임